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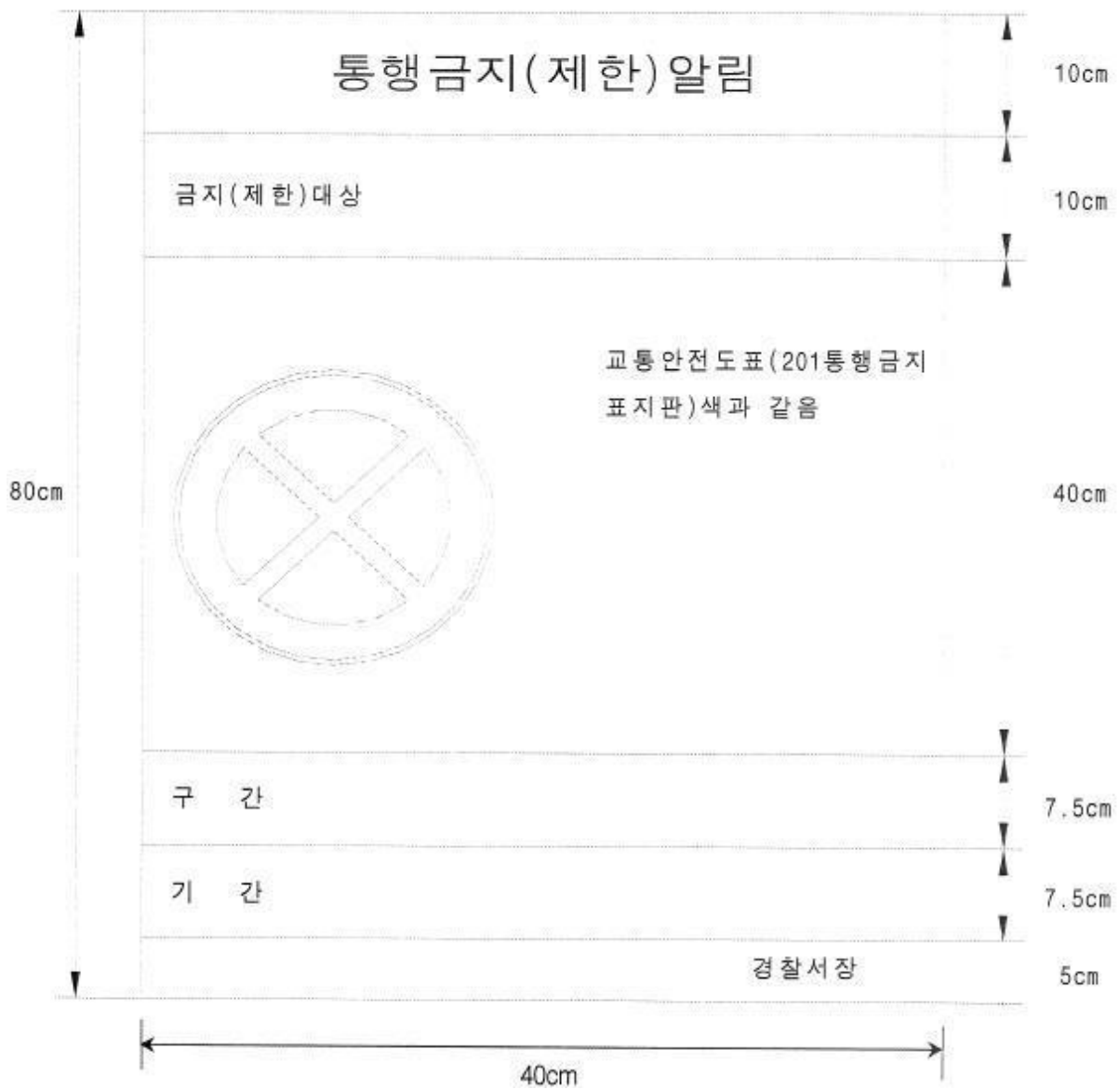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8] <개정 2024. 11. 14.>

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(제10조제1항 관련)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이 통행금지(제한) 시



2.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(제한) 시



비고

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표시판의 크기를 2~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.